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민 간 인 통 제 선 이 북 지 역 의
산 지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민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밖에 산림휴양·치유에 필요한 시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,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인 “치유의 숲”을 치유에 필요한 시설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

* 치유의 숲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) :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

3. 주요내용

가. 보전산지내 “치유의 숲” 설치 허용(안 제14조제3항제1호)

- 1)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내에서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치유의 숲”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
- 2) 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(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)제1항제6호의 허용행위 중 “그밖에 산림휴양·산림치유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에 “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”치유의 숲”을 추가
- 3) 민북지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산림치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가 기대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월 ~ 2023. 2월)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1호 중 “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”을 “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·제5호에 따른 산림욕장·치유의 숲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) ① ~ ② (생략)	제14조(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	③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, 전망대	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·제5호에 따른 산림욕장·치유의 숲,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~ ⑭ (생략)	④ ~ ⑭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지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123